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

- 제정 2011. 1. 1.
- 개정 2012. 1. 1.
- 개정 2013. 8.19.
- 개정 2016. 3. 1.
- 개정 2017. 3. 1.
- 개정 2018. 3. 1.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은 산학·예산처장, 교무처장, 교육지원처장, 학생대표 3명,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 - ③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으로 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- ⑤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,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- ⑥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
 - 2.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· 결산 심의
 - 3.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**제4조(회의 및 의결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한다. 단,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.
 - ②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위원 1/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회의를 소집한다.
 - ③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. 다만, 개인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.
- 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